







# 법 제 처

보다 나은 법치

수신 공주시장(시정담당관)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주시 시정담당관-15174(2018. 11. 14.) 관련입니다.
3.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해당하는지

나.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

다.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귀농인 지원사업을 한 것이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행위인지

4. 먼저 질의 가 및 질의 다와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써, 법제처에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령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을 적용할 때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법령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있고, 법제처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법령 집행기관의 역할을 대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 사업추진실적서의 내용 및 지원사업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바, 앞에서 안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는 귀 시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권한이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고 질의 나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

